

한·중교류센터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가천대학교와 중국 산둥대학교 한국학대학이 공동 설립·운영하는 한·중교류센터(이하 '교류센터'라 한다)의 본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교류센터는 본교와 중국간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한·중 양국 학생의 유학, 교환, 어학연수 등에 관한 사항
2. 한·중 양국 교직원의 교환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
3. 한·중 양국 졸업생 취업 알선 등에 관한 사항
4. 한·중 양국 교원 또는 연구기관 간의 합동연구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관한 사항
5. 국제세미나 개최 및 학회지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
6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와 교류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

제3조(센터장 등) ①교류센터의 장은 대외협력처장이 겸직한다.

②센터장은 총장이 임면하며, 교류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제4조(연구원) ①교류센터에 2명이상 5명이하의 연구원을 둔다.

②연구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

③연구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.

④연구원 중 1명은 중국 중·한교류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.

⑤연구원 중 1명은 중국 중·한교류센터의 연구원을 초빙하여 본교의 교류센터에 근무하게 한다.

제5조(사업보고) 센터장은 교류센터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와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운영세칙) 교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4-1-12~2 제4편 부속기관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